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 검토

변호사 이 명 숙

I. 글을 들어가며

유네스코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번 한일 월드컵의 주제를 ‘아동’으로 정했을 정도로 아동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각 국가마다 아동의 보호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7.1.부터 시행된 개정아동복지법에 ‘아동1)학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학대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아동 2명 중 1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고, 10명 중 1명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²⁾, 이러한 아동학대의 절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은 가정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 학대 정도가 심하더라도 학대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르침이나 징계를 위해서..’라는 이름으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아동’과 유사한 개념들 중,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남녀’로 되어 있다. 통상 ‘어린이’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유아’는 미취학 아동인 ‘7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참고로, 국제협약에서는 ‘18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다.

2) 2000년 서울대 의대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조사한 통계자료

로 손쉽게 자행되고 있고,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저조하다. 또 어쩌다 신고가 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위에서도 같은 잘못된 인식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쉽게 용서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의 현황과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들을 검토한 뒤,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불과한지라,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아동학대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0.2.1.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최근 1,2년 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전국적인 단위의 통계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므로, 미흡하기는 하지만 최근의 통계들을 근거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발생률

2000.6월 발표된 아동학대에 관한 전국조사³⁾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에 이르러, 우리나라 아동 2명 중 1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고, 10명 중 1명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3) 2000.6월 서울대의대(담당 홍강의교수)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전국의 일반가정 1,094가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부모 397명, 학대사례가 신고된 아동 115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수치임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건수는 4,133건(하루 평균 11건)으로,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2,105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상담건수는 1997년의 807건, 1998년의 1,238건, 1999년의 2,155건, 2000년의 3,150건과 비교해 볼 때 해마다 아동학대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담수치는 보건복지부가 7개 시립아동상담소와 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취합한 연도별 신고된 사례수로서, 이들 신고사례는 숨겨진 아동학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담이나 신고건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개정아동복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신고율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많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부활된 ‘학교 체벌 허용방침’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백히 잘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대체로 가정내 아동학대와 가정 외 아동학대로 구분하고 있다. 가정내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고, 가정외 아동학대는 집단시설내의 아동학대,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 매춘을 포함한 부당한 상업적 이용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신고의식이 미흡하여 아동학대 사례가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아동학대신고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가 된 경우 외에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가정내 아동학대나 가정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 5.29.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⁵⁾에 따르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위험상태에 그

4) 유형별로는 폭행 구타 상해 등 신체학대가 23.5%, 폭언 악담 위협 등 정서학대가 19%, 집에 가둬놓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방임행위가 20.2%, 성학대가 1.1%였다. 또 학대는 아니지만 체벌경험이 있는 부모는 74.6%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만연된 학대나 체벌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5) 보건복지부가 ‘2001년 아동학대신고전화(국번 없이 1391)에 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2,105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발간함

대로 노출시키는 등 ‘무관심’으로 대표되는 방임형이 31.9%⁶⁾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⁷⁾가 22.6%, 유기 6.4%, 정서적 학대가 5.4%, 성학대가 4.1%,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2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전화를 통해 나타난 아동학대의 유형은, 지난해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던 ‘신체적 학대’는 점점 줄고 ‘방임’형 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아동학대의 신고

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6%에 그친 반면, 비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가 있는지 아예 모르거나, 경찰, 검찰의 진술이나 법원에서의 증언 등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피하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아동학대의 가족 유형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친부모⁹⁾에 의한 학대(88%)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반가정(25%), 편부가정(32%), 편모가정(10%), 재혼가정(11%), 친인척 보호(9%), 동거(3%) 등의 분포를 보여, 아동학대는 재혼과 이혼 등 가정해체를 경험한 가정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¹¹⁾.

6) 방임형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장기간 위험상태에 내버려 둔 ‘물리적 방임’이 53.1%로 가장 많았고, 교육적 환경이나 의무교육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이 26.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는 유형이 10.6% 등의 순이었음

7) 신체학대는 명(타박상)이 가장 많았지만, 뇌손상, 두개골 골절, 복부출혈, 목조름, (아파트 등에서) 던짐 등 치명적인 학대로 드물지 않았으며, 실제로 7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음

8) 신고의무자가 아닌 신고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30%), 이웃 및 친구(26.0%), 친인척(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9) 학대행위를 한 부모의 연령은 30대가 37%, 40대가 31%, 20대 14%, 기타 18%로 나타남

10) 위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879건인 편부모 가정 중 432건(49.2%)은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친

가정 해체 유무를 떠나서,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부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고¹²⁾, 연간 청소년 자살건수가 615명(1996년 경찰청 자료)¹³⁾을 넘고 있다. 또, 청소년 10명 중 6명이 ‘가정문제’ 때문에 가출충동에 빠지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이 18,442명(2000년 경찰청 자료)¹⁴⁾에 이르고 있는 등, 부모와 청소년간의 정신적 유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해체와 부모와 청소년간의 정신적 유대의 결여에서 파생되는 아동학대 및 방임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5.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80%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그 외에 유아교육기관(2.3%), 집 근처(2.0%), 이웃집과 친척집(각 1.5%)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2,105건 중 1,098건(53%)은 피해아동이 학대받던 가정에서 그대로 살도록 조치되었고, 가정위탁, 그룹홈 등 보호시설에 인계된 경우는 33.5%에 불과했다. 물론 학대의 정도를 고려하고 부모가 재발방지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지만,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해자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부에 의한 학대가 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 친부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친모의 가출 이후 혼자 자녀들을 돌보거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12)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회가 전국의 초, 중, 고 학생 등 청소년 1,43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6%가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자살충동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34.5%)과 성적부진(27.5%), 따돌림(9.2%)순이었으며, 응답자의 59.1%(846명)가 부모의 간섭(373명)과 부모의 학대, 폭행(74명), 부모와의 불화(72명) 등 가정문제 때문에 가출 충동에 빠지는 등, 부모와 청소년간의 정신적 유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13) 1996년 경찰청 통계자료, 최근 등장한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을 고려하면 최근의 통계자료는 급상승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보여짐
- 14) 공식통계에서 누락된 인원을 고려하고 형식적으로는 가출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해지역을 접근하면서 가출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면, 실질적 가출청소년의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울타리를 뛰어 넘는 우리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57쪽, 청소년 보호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조국>

Ⅲ.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검토

1) 아동학대 관련법률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인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상 처벌이나 보호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친권상실, 친권행사제한, 지속적인 가해자교육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로는 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을 통한 보호나 입양,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후견인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제재규정이나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은 헌법,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년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고만 한다), 호적법 등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이들 법률 중 명확하게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이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 개정 과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의 명칭 개정 등 부분적으로 수차례 개정되어 오다가 2000년 전면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처음 아동복지법은 6.25.전쟁 후 ‘대량적인 고아발생’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법의 대상을 일반아동이 아니라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입법되었다. 그로부터 20여년 후인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법취지가 요보호아동에서 전체아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세웠으나, 명목적인 측면에서만 일반아동에 대해서도 포괄하는 경향을 보였을 뿐 일반 아동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61년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의 내용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00년대의 아동문제를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아동문제의 본질이 변화¹⁵⁾하는지라 그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아동권리의 확립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일반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국제적인 경종이 되어 왔다. 그 결과 1996년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6)의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개정과 실천제도의 수립을 권고 받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0년 아동학대관련 규정이 포함된 전면적인 아동복지법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개정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의 정의 및 처벌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면서(법 제 2조 제 1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 2조 제 1호, 4호).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인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15)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요보호아동은 1960년대부터 절대적,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고, 그 핵심적인 보호조치인 시설보호아동의 수는 1995년의 경우 전체 18세 미만의 아동 가운데 불과 0.12%에 지나지 않는 숫자이며, 나아가 현행 아동복지전달체계에 의하여 취급된 아동들, 예컨대 시설아동부터 요보호아동의 발생으로 처리된 아동, 아동상담소 이용의 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보호받아 온 아동까지 모두 합해도 1996년의 경우 전체 18세 미만 아동 중 0.5%에 해당하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한국아동학대에 방협회,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2000, PP. 5-6>

16) 첫째 과거와 달리 가정해체에서 오는 문제 외에 비행과 폭력, 약물 오,남용, 가출 등에 대한 아동치료 및 재활에의 욕구가 폭넓게 등장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아동지도라든가 자폐아 및 과잉행동 등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동치료 욕구도 사회 내에 매우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둘째, 유교적인 관습과 기성세대의 자기 갈등의 결과로 신체적 약자인 아동에게 가해지는 각종 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고질적인 가정내, 나아가 사회 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고조도 새로운 경향의 하나이다. <한국아동학대에 방협회,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2000, pp6-7 참조>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29조 제1호 내지 4호, 법 제40조 2호).

그러나,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이 법에서 정해진 양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¹⁷⁾이나 성폭력방지법, 일반 형법¹⁸⁾ 등 다른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어 양형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 이러한 특성에 맞는 처벌규정의 도입이 요청된다. 일반 범죄들과는 달리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가해자 교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교화시킬 수 있는 보호처분의 도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고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가해자의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아동복지법 대신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

이 법 제 16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에 학대아동의 신고,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을 포함시키고 있고, 법 제24조에서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법 제 25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법 제31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를, 법 제32조에서 소요비용에 대한 부모 또는 가해자로부터의 비용징수를, 법 제38조에서 종사자의 비밀누설금지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기하여 현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외 전국에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이로써 은폐되어 온 아동학대가 좀

17) 예컨대, 이 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0조 1항,2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보다 훨씬 높은 양형임

18)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법 제 250조),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257조),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법 제 258조) 등으로 규정되어,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상해로 인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부과되어 있다.

더 쉽게 전면에 노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아동학대에 국가, 사회가 보다 더 전문적,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걸음마 단계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원 자질이나 업무능력의 향상,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자격 부여, 재정적인 지원¹⁹⁾ 등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다. 아동학대 신고 관련 규정

법 제26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여성복지상담소 상담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법 제23조에서는 긴급전화설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기하여 아동학대신고전화인 ‘1391’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1391에 대한 홍보부족²⁰⁾, 보복범죄에의 두려움 등으로 아동학대신고는 전체 발생율에 비하여 여전히 너무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범죄로 취급하여 벌금이나 금고에 처하거나(미국), 벌금에 처하는(대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선언적 의미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²¹⁾은 저조하기만 하다.

라. 아동학대 발견시 응급조치 규정

법 제27조에서는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격리 또는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 27조 제1항), 법 제 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보호조치²²⁾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 27조

19)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되어 있음

20) 아직도 1391 보다는 119나 112 등의 긴급전화나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를 이용하거나 청소년 보호전화인 1388이나 가정폭력상담전화인 1366 등을 통한 신고전화가 많다.

2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에 신고한 전체 건수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항).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를 받고도 ‘가정사’로 취급되어 대응이 소홀하였던 그동안의 대처를 생각해 볼 때, 위 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규정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친권자인 부모가 위 응급조치에 반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나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친권행사 제한이나 접근금지 등 일정한 내용의 임시조치를 긴급히(예컨대 24시간 이내 등)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임시조치규정(법 제 29조)²³⁾을 적용시킬 수 있다.

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학대아동의 보호

법 제 28조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절차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법원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② 법원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가할 수 있으며, ③ 수사기관이 학대아동을 조사할 경우에도 위 ① ②항과 같이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의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자 동석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비공개재판, 가해자인 피고인 퇴정 후의 심문²⁴⁾, 진술의 반복을 최소화하

22) 제10조(보호조치)에서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는 것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①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명령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시조치는 검사의 신청으로부터 24시간 내에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4)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 297조 제1항)

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자 동석규정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 아니라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그 외에도 법정의 비공개, 공판 전 아동 증언의 비디오 녹화와 공판에서 비디오 녹화된 증거의 사용²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증언(live television link), 전문(hearsay) 증거²⁶⁾의 허용, 아동의 증언능력의 인정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아동학대관련 수사나 재판절차상 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바. 학대 아동의 친권 및 후견인 관련 규정

법 제 12조에서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3조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위하여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 법 시행 이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제한을 법원에 청구한 선례가 없고²⁷⁾, 후견인의 선임이나 해임을 청구한 선례 또한 없다. 뿐 아니라, 이러한 소송을 수행할 인력이나, 법률지식도 없고, 그 비용 또한 부담이 되며, 위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을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 또한 실제로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위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은 많이 있으므로,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친권행사제한규정(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5)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8.31. 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비디오 증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6) 아동이 자신의 학대사실을 부모, 교사, 의료인, 친구 등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동의 진술은 학대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정 밖에서의 진술을 전문(hearsay)이라고 한다.

27) 2001년 제주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위 규정(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학대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함

아동의 친권상실규정은 위 법 외에도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법조문에 불과하다. 또,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친권행사제한규정이 있지만, 이 또한 가정법원 판사들에 의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이들 조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되고 관련법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방지법

가족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학대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기소유예처분을,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며, 기소유예와 보호처분, 형사처벌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검사가 판단하게 된다. 아동학대의 특성상, 실무상으로는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으로의 처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 적용 범위

위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아동학대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말하는 ‘가족구성원’이란, ①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 ③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 계모서자 관계,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2호).

둘째, 아동학대 중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대부분 신체적 학대 및 유기에 해당됨)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범죄만 위 법에 적용되고, 아동학대 중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위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주요내용의 검토

① 신고의무(법 제 4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일정한 신분에 있는 자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²⁸⁾.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가정폭력이

28)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신고의무자는 아동교육기관 종사자,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범죄라는 인식의 저조 및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지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② 응급조치(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 ㉢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에의 통보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위 규정 위반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위 규정의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③ 고소특례(법 제6조)

아동학대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이때, 형사소송법 224조²⁹⁾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동은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를 아동학대로 위 법에 기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④ 임시조치(법 제29조)

위 법에 기한 보호처분(법 제40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한 기간³⁰⁾ 동안 가해자에게 ㉠ 퇴거 등 격리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친부모에 의하여 학대받는 아동의 경우, 위 임시조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이 아동을 보호,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상담소 등 상담시설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음 (법 제4조)

29) 형사소송법 제 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30)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장할 수는 있다.

관 등의 선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⑤ 보호처분(법 제40조)

아동학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일정한 기간³¹⁾ 동안 ㉠ 접근행위의 제한 ㉡ 친권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감호위탁 ㉦ 치료위탁 ㉧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법 제63조).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보호처분을 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입양이나 그룹홈제도, 위탁가정 알선 등의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또,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아동학대를 일삼는 부모의 성향이 시정될 수 있을지 의문인 바, 보호처분의 내용이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화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⑥ 그 외에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일반 형법과는 달리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며(법 제9조, 10조), 필요한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법 제32조),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법 제48조, 56조 내지 61조).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절차나 기간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그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쉽게 결정이 나고 그 집행 또한 간이하하게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31)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 나머지 보호처분은 6월을 넘길 수 없으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법 제 41조, 45조).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특별법 등

- (1)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점점 많아져가고 있는 요즘³²⁾, 사리변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성폭력은 물론 성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장에서 구제해 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는 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남녀’를 의미하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³³⁾.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뒤 두차례에 걸쳐 위 법에 따른 신상공개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사범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신상공개로 인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으며, 신고율도 점점 많아져 가는 추세이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 관련 범죄나 피해자를 위한 절차상의 보장은 성폭력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적용된다.

32)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년 상담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성폭력 피해 상담의 연령별 비율은 성인이 59.8%, 미성년 피해가 38.9%(청소년이 17.2%, 어린이가 13.1%, 유아가 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린이, 유아 피해가 2001년 622건(어린이 377건, 유아 245건)으로 2000년 439건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468건(75.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외 강간, 성희롱의 순이다. 이처럼 어린이, 유아 피해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2001년 유아 성추행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유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성추행에 대한 부모의 인식 향상도 상담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www.sistwrs.or.kr 참조>

33) 2000.1.12. 전문이 개정된 아동복지법보다 한달여 정도 더 늦은 2000.2.3. 개정되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동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므로 ‘19세 미만의 남녀’를 지칭하는 청소년에 모두 포함되므로, 아동 학대 중 성학대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주요내용들

- ①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에 대하여 형법보다 그 형을 상향 조정하였다(정보법 제10조).
- ② 아동이 자발적으로 윤락행위나 성매매행위를 하였을지라도 그 상대방은 성매수자가 되어 처벌받게 되고 이에 관여한 성인들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에 가담한 아동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아니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선도보호를 받을 수 있다(정보법 제13조 내지 17조).
- ③ 수사 및 재판절차상의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및 비공개재판규정이 적용된다(성폭력특별법 제 22조 내지 22조의 2).
- ④ 신고의무 : 아동(18세 미만의 자)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특별법 제 22조의 3). 이들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규정은 여전히 없다.
- ⑤ 고소제한 및 고소기간의 특례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더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도 형사소송법상의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되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 18조, 19조).
- ⑥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자와 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신상이 공개된다(법 제 20조 제1항 내지 5항). 현실적으로 신상공개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한계가 많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어서 제대로 된 신상공개를 위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폭발적이 되어 성범죄 예방이나 대책을 위한 나름대로의 영향은 주고 있는 셈이다.

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국무총리소관으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가출아동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근하거나 그 구성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소년보호법상들의 제도 들도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5.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법 제62조 제1항), ②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이나 갱내근로에 사용하지 못하고(법 제 63조 제1항, 제70조), ③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64조).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법 제65조), 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66조). ⑥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법 제67조), ⑦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법 제68조), ⑧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112조 내지 115조)

6.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호적법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며(법 제7조),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8조).

위 입양특례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은 점점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90% 이상은 불임부부이며, 거의 모든 입양부모들은 아동을 친자로 입적시켜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부모들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아를 소개받아 양자로 신고한 후에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개인적인 방법을 통한 불법 비밀입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양되는 아동들의 95% 이상이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입양부모들이 입양알선기관을 통한 입양을 꺼리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호적법상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 발행의 출생증명서나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다(호적법 제 49조 제4항, 호적예규 참조). 따라서, 입양알선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우보증서만 작성하면 얼마든지 친자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양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통하여 친자로 호적신고를 해 버리고 있다.

그러나,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지 않고 산부인과 등을 통하여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불법입양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된다. 즉, 불법 비밀 입양한 아동을 유흥업소 강제출연, 앵벌이 이용 등의 착취 및 학대를 하기 위하여 입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다른 가정에 입양될 필요성이 있는 아동일지라도, 입양 부모의 호적상 입양사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성과 본을 바꾸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호적에 모두 나타나므로 이를 꺼리는 입양부모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호적법 및 입양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2인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출생신고를 금지하여 친자로 호적신고하는 방법을 통한 불법적인 비밀입양을 막고,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인가를 받고 입양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출생신고서 등을 발급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입양신고를 대신하게 된다면, 현재의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보완될 수 있어 보인다.

IV.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의 문제점과 대책

현행 법령들을 검토하면서 살펴 본 문제점이나 보완점 외에 추가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관조직과 법령의 정비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조직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18세 미만의 한 여자 아동이 부모의 구타와 방임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며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간근로에 시달리며 업

주에게 성폭력까지 당하며 지내다가 성매매행위(세칭 원조교제)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자. 이 아동에게는 아동복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가정폭력방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수많은 법률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소관부서도 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노동부(근로기준법), 법무부(소년법),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여성부(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등으로 다양하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유관기관정비와 법의 정비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정비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모든 범죄를 망라하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동시에 아동복지법에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까지 도입하는 방법이나,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한 법규정을 두고,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절차 또한 보완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동학대의 경우처럼 가해자로부터 일시적 혹은 장기적 격리가 요구되거나 또는 가족을 보존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또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하고 상이한 체계가 개입되므로 이들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통합적인 주관 부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아동학대의 신고율 증가를 위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져서 은폐된 아동학대가 사회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나 1391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고, 신고의무신고의무자의 신변이나 비밀을 보장해 주고,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또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조사나 법정 증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인터넷상의 메일이나 전화, 서면진술, 출장신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1회성에 그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 신고의무자에게 보복법

죄가 있을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일정한 제재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로 인한 재정확보 방안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 보호,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뒤따른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마련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민간이나 사기업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나 후원금 등을 통한 재정확보나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적용문제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아동학대로 인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간이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각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거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등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아동의 진술이나 증언확보 등을 위한 배려

아동복지법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이를 노출시켜 적절한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진술이나 증언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인 배려가 요청된다.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위하여 통역 등의 배려를 해 주는 것처럼, 아동을 위해서도 일반 성인에 대한 조사나 증언과 달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가지 법적인 배려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시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이 국가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에서의 증언, 민사상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입양 등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대신 해 주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친권상실, 후견인선임 청구 등과 관련하여

친권이 박탈되거나 상실되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를 자행될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격리시키는 과정이나 격리된 후의 아동을 위한 후견인제도나 입양, 그룹홈, 보호시설에의 입소절차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법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의 친권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 제도에 현재의 친권행사제한규정 외에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 아동이 머물 곳을 함께 지정해 주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예컨대 보호시설에의 입소, 그룹홈제도, 위탁가정 등) 또, 민법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친권상실규정을 적용하려면 이와 동시에 후견인이나 영구입양 등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함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선변호인 제도나 친인척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가 직접 민사법원에 아동을 보호할 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거나, 검사를 통해 형사사건, 혹은 가정보호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관할 법원 판사에게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뿐 아니라, 친권상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동안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도 도입되어야 한다.

6.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

아동학대가 심각한 정도가 아닌 이상, 가능하면 가정 내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등 학대하는 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나 기타 사회복지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대아동이 있는 가정의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 마련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는 가해자를 교화해서 피해자인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의 과거 가혹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일회적인 처벌위주의 현행 처벌규정은 그 효과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아동학대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전국적인 규모의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그 현황에 맞는 처벌규정이나 보호처분-보호관찰, 상담명령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 아동학대로 형사처벌받거나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관찰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의 정비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7. 해체가정 증가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우리사회에서 이혼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³⁴⁾, 이혼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한쪽과 살게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1.5.2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우리 사회의 연간 이혼 수는 12만건으로, 하루 평균 329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70.4%(자녀가 2명인 경우가 34.3%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31.7%, 3명 이상인 경우는 4.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하루 평균 262명, 한해 평균 95,630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들³⁵⁾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으로 남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혼가정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방임, 유기되는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아 시설이나 친인척에게 보내지기도 하고, 부모 중 한 명과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방임, 유기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법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요구된다. 우선, 이혼하는 단계에서 협의이혼이건 재판이혼이건 자녀양육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정비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혼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혼과정에서 자녀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혼

34) 통계청이 2001.5.23.발표한 '2000년 혼인, 이혼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9백 15쌍이 혼인하고 3백 29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지난해 12만쌍이 이혼하여 20년 사이 이혼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해동안 인구 1,000명당 이혼한 부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70년 0.4건에서 85년 1.0건, 90년 1.1건, 95년 1.5건에 불과했지만,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 3년간 2.5건으로 대폭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아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발생하는 한부모 미성년자녀수를 추정해 본 수치임

*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 : 231.6가구{ = 329쌍(하루평균 이혼하는 가구 수)
* 70.4%(미성년자녀를 둔 가구 수) }

* 1명 자녀를 둔 가구에서 발생하는 한부모 자녀 수 : 73.2명(= 231가구 * 31.7%)

* 2명 자녀를 둔 가구에서 발생하는 한부모 자녀 수 : 158.46명(= 231가구 * 34.3%)

* 3명 자녀를 둔 가구에서 발생하는 한부모 자녀 수 : 30.49명(=231가구*4.4%, 3명으로만 계산)

** 하루평균 발생하는 한부모 미성년 자녀 수 : 262.15명

[= 73.2(1명인 경우) + 158.46 (2명인 경우) + 30.49(3명인 경우)]

** 한해 평균 발생하는 한부모 미성년 자녀 수 : 95,684.75명

[= 262.15명(하루 평균 발생하는 한부모 미성년 자녀 수) * 365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혼한 부모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와 법제도 보완 또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배근, 2002,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예방대책, 한국의 아동복지법, PP.419-450
- 배태순, 2002, 국내입양과 입양법 및 아동복지법, 한국의 아동복지법, PP.189-230
- 조 국, 2002, 가출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울타리를 뛰어 넘는 우리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진수, 2000, 아동 증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화정 외, 2000,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의 관계, 한국이웃사랑회 사업연구집③
- 이태수, 2000, 개정아동복지법의 고찰,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 안전망구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 안동현, 1999,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구축, 국회인권포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